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신설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74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신설(안 제25조제10항 등) ..	2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외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13.

다. 회 부 일 : 2026.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현행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수령단체는 신탁관리업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권리행사를 신탁하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관리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보상금수령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등).

Ⅲ. 검토의견

1.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신설(안 제25조제10항 등)

개정안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서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지정 결격 사유, 의무, 감독, 징계의 요구, 업무의 정지, 청문 및 과징금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 ⑥ (생략)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u>지정하는 단체</u> 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u>그 단체</u> 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 ----- -----지정하는 단체(이하 “ <u>보상금수령단체</u> ”라 한다)----- ----- -- <u>보상금수령단체</u>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항에 따른 지정 결격 사유에 <u>해당하지 아니할 것</u>
⑧ 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⑧ <u>보상금수령단체</u> 는----- ----- ----- ----- ----- -----.

현행	개정안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제7항에 따른 단체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⑩ (생략) ⑪ 제7항·제9항 및 <u>제10항에</u>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생략)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	⑨ -----<u>보상금수령단체가</u>----- -----. 1. ~ 3. (현행과 같음) ⑩ <u>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결정 사유, 의무, 감독, 징계의 요구, 업무의 정지, 청문 및 과징금 처분 등은 제105조제7항, 제106조제7항,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제1항제3호·제4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10조 및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위탁관리업” 및 “저작권신탁관리”는 “보상금관리”로, “허가” 및 “신고”는 “지정”으로, “사용료”는 “보상금”으로 본다.</u>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 -----<u>제11항에</u>----- -----.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현행	개정안
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u>제11항까지</u>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⑧ (생략)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u>제25조제10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생략)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u>제11항까지의</u>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생략)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u>제11항까지의</u>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생략)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	-----<u>제12항까지</u>의-----. ⑦·⑧ (현행과 같음)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제25조제11항</u>----- -----. ⑦ (현행과 같음)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2항까지의</u>-----. ③·④ (현행과 같음)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2항까지의</u>-----. ③·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①·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	-----제12항까지----- -----.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2항까지----- -----.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2항까지----- -----.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2항까지----- -----.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현행	개정안
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항까지의----- -----.

현행법 제25조1)에 따르면 학교교육 등의 목적인 경우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이른바 ‘교육목적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저작재산권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를

- 1)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 ⑤ 제3항 각 호의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통하여 행사되어야 함.

이와 같은 ‘교육목적 보상금’ 관련 규정은 ‘도서관 보상금’(제31조),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제75조·제82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제76조·제83조)·공연자(제76조의2·제83조의2) 보상금’ 등에도 준용²⁾되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현재 ‘교육목적 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의 보상금수령단체는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로, ‘실연자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 ‘음반제작자 보상금’은 ‘(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26년 4월부터)로 각각 지정되어 있음.

[보상금 제도 종류 및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현황]

보상금 종류		저작권법 근거	보상금 수령단체	납부대상	연간징수액 ('25기준)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교과용 도서 보상금	제25조제1항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03년~계속) * 현재 기준 지정기간: 2026.7.~2028.6.(2년)	출판사	약 40억 원
	수업목적 보상금	제25조제3항		대학, 교육기관	약 37억 원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제25조제4항		교육부, 교육청	약 15억 원
도서관 보상금		제31조제5항		도서관	약 60백만원
실연자에 대한 음반 이용 보상금	방송보상금	제75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88년~계속) * 현재 기준 지정기간: 2026.7.~2027.6.(1년)	방송사	약 61억 원
	디지털음성송신 사업자보상금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 사업자보상금	약 11억 원
	공연보상금	제76조의2		백화점, 호텔 등	약 20억 원
음반 제작자에 대한 음반 이용 보상금	방송보상금	제82조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26.4 신규지정) * 현재 기준 지정기간: 2026.4.~2029.3.(3년) (‘88~’19 한국음반산업협회, ‘20~’25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방송사	약 47억 원
	디지털음성송신 사업자보상금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 사업자보상금	약 29억 원
	공연보상금	제83조의2		백화점, 호텔 등	약 20억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상금수령단체는 신탁관리업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권리행사를 신탁하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탁관리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상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 발생 시 제재 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보상금 수령단체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실시한 2025년도 업무점검에서, 과도한 수당신설 등 예산의 부적정 집행, 보상금 오징수 및 미지급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으나, 「저작권법」 상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 권한³⁾만이 있고 이를 제재할 수단이 부재하여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⁴⁾.

3)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정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임.

-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 ▲ 임원 친인척(6촌)과 관련된 업체와 2건의 계약 체결
 - ▲ '25년 총회 보고 없이 자녀 학자금(연 3,200만원), 식대(연 4,010만원), 통신비(연 1,945만원) 등 각종 수당 신설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 규정 미준수 : 공모없이 전무 연임, 보상금 오지급
 - ▲ 전무이사·본부장 비위·전횡 : 예산유용, 직장내 괴롭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 ▲ 업무수행능력 미비 : 수령자 급감, 권리자 민원, 3년간 12명 퇴사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 보호기간(10년)이 만료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보상금 오징수
 - ▲ 저작자를 잘못 분류하여 협회 회원임에도 보상금 10년간 미지급 등

* 자료: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 및 2025년 업무점검 결과 발표」(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 2026.2.20.) 및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가공

이에 개정안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서도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 감독 규정]

구분	준용조문	주요 개정내용
결격사유	제105조제7항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공개 의무	제106조제7항	업무규정, 사업보고서, 결산서, 감사보고서 등
감독	제108조	보고요구·명령·조사·자료요청권
징계 요구	제108조의2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업무정지	제109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명령(보고 불이행, 업무 명령 불이행, 공개 의무 위반, 조사 및 자료요청 불응 등)
청문	제110조	업무정지 등의 명령 시 청문 실시
과징금 처분	제11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바탕으로 보상금 수령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및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특히,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분야의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신탁받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만을 행사하는 저작물 신탁관리단체에 준하는 관리·감독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상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보상금수령단체가 해당 분야의 모든 보상권리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인 만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준하는 관리·감독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6

참 고

협회 의견

기관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비고
한국대중음악 산업협회 (구 한국음악 콘텐츠협회) (‘26.4.23.)	• 이견 없음 -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함	보상금 수령 단체 (‘26.4~)